

# 2020년도 일한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교류사업(석사, 박사과정) 모집요강

일한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교류사업(석사, 박사과정) 유학생은 일본대학에서 정규생 또는 비정규생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외국인 유학생(연구유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 아 래

### 1. 일한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교류사업이란?

1998년 일한 양국 정상이 발표한 일한공동선언 「21세기의 새로운 일한 파트너십」 및 공동선언서의 부속서에 따른 정부간 유학생 및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한 「일한이공계 학부유학생 사업」을 발전시킨 형태. 본 「일한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간의 상호교류 확대와 일본에서 연구함으로써 일본과 한국간의 가교 역할을 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 2. 모집 분야 : 이공계 분야 (그 외 분야는 신청 불가)

분야	전공분야
이학계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 지학, 원자력이학
공학계	기계공학, 전기통신공학, 토목건축공학, 응용화학, 응용이학, 원자력공학, 광산학, 금속공학, 석유공학, 선박공학, 항공공학, 경영공학, 공예학
농학계	농학, 농예화학, 농업공학, 수산학, 임학, 식품학

### 3. 채용 예정 인원 : 15명 정도

### 4. 응모자의 자격 및 조건

- (1)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일 것. 신청 시 일본 국적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신청 시 일본 이외에 생활거점을 둔 일본국적 소지 이중 국적자에 한해 일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일본 국적을 이탈할 예정자는 대상으로 한다.
- (2) 연령 : 1985년 4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
- (3) 학력 : 일본 대학원 석사 과정, 박사과정(전기) 또는 박사과정(후기) 중 최초 입학 희망과정에 필요한 입학 자격을 가진 자. (입학 전까지 이 조건을 충족시킬 예정이 확실한 자도 포함)
  - (a) 석사과정, 박사과정(전기)
    - ① 외국(대한민국 포함)에서 학교 교육 16년 과정을 수료한 자
    - ② 외국(대한민국 포함) 대학, 외국에 있는 학교 중 대학에 상당하는 학교에서 수업 기한이 3년 이상인 과정을 수료하여 학사 학위 상당의 학위를 수여한 자
    - ③ 이 외에 일본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전기)에 입학 자격을 가진 자
  - (b) 박사과정(후기)
    - ① 외국(대한민국 포함)에서 석사 학위 및 전문직학위 상당의 학위를 수여한 자
    - ②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이나 연구소(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 포함)등에서 2년 이상 연구에 종사한 자로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가진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이 외에 일본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 자격을 가진 자
- (4) 학업성적 : 최종학력의 GPA 성적이 3.0 만점에 2.3점 이상인 자. (성적이 3.0 만점이 아닌 경우, 3.0 만점으로 환산해서 산출할 것)
- (5) 일본어 등 : 적극적으로 일본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자.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일본 입국 후에도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해 이해하려는 의욕이 있을 것. 또한, 일본에서 연구에 종사하고 생활 적응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6) 건강 : 소정의 건강진단서 양식에 따라, 일본 유학에 대해 심신 모두 지장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 (7) 출발 시기 : 일본 입국 시기는 다음 중 하나로, 희망하는 시기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원칙적으로 신청 후 입국 시기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① 4월 : 원칙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일본입국이 가능한 자. 거주지에서의 출발도 4월 1일 이후로 한다.
  - ② 10월 : 원칙적으로 수용 대학이 지정한 같은 해의 각 학기 개시일(9월 또는 10월)부터 전후 2주 중 수용대학이 지정한 날에 일본입국이 가능한 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문부과학성에서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부과학성 또는 수용 대학이 지정한

기일까지 입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용을 사퇴할 것.

- (8) 비자 취득 : 일본 입국 전에 주한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유학」 비자를 새롭게 취득하고, 취득한 「유학」 재류자격으로 입국할 것. 따라서 이미 다른 재류자격(「영주자」, 「정주자」 등)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학」으로 변경한 후에 신규로 입국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비외국인유학생 신분 종료 후에 다시 「영주자」,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신청해도 당연하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 신규 「유학」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일본에 입국했을 경우, 장학금 지급 중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 (9) 대상 외 :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대상 외로 한다. 채용 이후에도 판명이 될 경우 사퇴할 것.
- ① 신청서 제출 시, 현역 군인 또는 군속인 자. 다만, 도일 전까지 군속인자가 아닌 것이 확실하고, 제1차 선고 합격 발표 전까지 해당 군을 이탈할 것임을 증명하는 관할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② 문부과학성 또는 수용 대학이 지정한 기일까지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자.
  - ③ 과거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자(일본 입국 후 사퇴한 자도 포함). 단, 장학금 지급 최종 달의 다음 달부터 장학금 지급 개시예정 달까지 3년 이상의 학업 또는 직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마지막으로 수급한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이 일본어 · 일본문화연수유학생(귀국 후 재적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자에 한함), 일한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영리더프로그램 유학생은 제외한다. 또한, 문부과학성 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Monbukagakusho Honors Scholarship for Privately-Financed International Students)는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제도 이외의 2019년도, 2020년도 장학금 지급 개시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한 자
  - ⑤ 신청 시 이미 재류자격 「유학」으로 일본 대학 등에 재적하고 있는 자 그리고 자국에 있어서 본 장학금의 신청 시부터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전까지 사비외국인유학생으로서 일본 대학 등에 재적, 또는 재적 예정인 자. 다만, 일본 대학 등에 재적 또는 재적 예정인 사비외국인유학생이더라도 장학금 지급기간 개시 전에 수료해 귀국할 것이 신청 시 확실하고, 재류자격 「유학」으로 새롭게 취득 후 일본으로 입국 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⑥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이외의 기관(자국 정부기관을 포함)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수급 예정인 자.
  - ⑦ 「졸업 예정자」로 소정 기일까지 학력의 자격 및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
  - ⑧ 신청 시 이중국적자로 일본입국 전까지 일본국적을 이탈한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자.
  - ⑨ 일본 입국 후, 재류자격을 「유학」 이외로 변경한 자.
  - ⑩ 신청 시부터 일본 이외에서의 연구활동(필드 워크, 인턴쉽 등)이나 휴학 등을 장기간 예정인 자.
  - ⑪ 박사과정 수료자 중,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
- (10) 기타 : 일본 유학 중, 일본의 국제화에 이바지하는 인재로서, 널리 지역 학교와 지역의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한국과 일본과의 상호 이해에 공헌함과 동시에 졸업 후에도 유학한 대학과 긴밀한 연대를 가지고, 졸업 후 앙케이트 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귀국 후에는 재외공관 등이 실시하는 각 사업에 협력함으로써,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자를 채용한다.

## 5. 장학금 지급 기간

### (1) 비정규생으로 재적하는 경우

- ① 4월 입국 :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 ② 10월 입국 : 2020년 9월 (주1) 또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두 경우 모두, 일본어 등 예비교육(이하 「예비교육」이라 함)이 필요한 자는 첫 6개월을 예비교육 기간으로 포함한다. 상기 이외 입국의 경우, 별도 문부과학성에서 결정한다.
- (주1)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월이 2020년 9월이 되는 경우는 수용대학의 학기가 2020년 9월 1일에 시작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학기가 2020년 9월2일부터 9월30일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월은 2020년 10월이 된다.

### (2) 정규생으로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 과정에 재적할 경우 : 일본 입국 시기에 관계없이, 각각의 정규과정을 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이하, 「표준 수업 연한」이라고 함. 각 과정의 표준 수업 연한은 「13. 진학 및 학위의 취득」을 참조)으로 한다. 예비교육이 필요한 자는 별도로 6개월간의 예비교육 기간을 가산한다.

## 6. 장학금 지급 기간의 연장

비정규생에서 정규생으로 대학원 정규과정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자, 혹은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전문직 학위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자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히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여 문부과학성의 심사에 따라 장학금 지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단, 아래 사항에 유의할 것.

- ① 장학금 지급 기간 연장 승인은 연장 신청에 채용되고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원의 정규 과정 시험에도 합격하여 진학한다는 조건하에 가능하다.

- ② 비정규생 신분으로 장학금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 ③ 연장 신청 승인을 받지 않고 상위 과정에 진학한 자는 장학금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사비 유학생으로서 진학 또는 재적하는 것은 가능)

## 7. 장학금 등

- (1) 장학금 : 재적하는 과정에 따라서 하기의 금액을 지급한다. 특정 지역에서 수학, 연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월 2,000엔 또는 3,000엔을 월 단위로 가산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해마다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대학을 휴학 또는 장기간 결석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① 예비교육기간 및 비정규생	월 143,000엔
② 석사과정 및 전문직학위과정	월 144,000엔
③ 박사과정	월 145,000엔
- (2) 교육비 : 대학의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검정료는 일본정부가 부담한다. 단, 정규생으로 진학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불합격이 된 경우의 해당학교 입학검정료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3) 여비
  - ① 입국 여비 : 문부과학성은, 상기 「4. (7) 출발 시기」에 기재된 소정의 기간 중에 일본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에게 여행일정 및 경로를 지정하여 항공권을 교부한다. 항공권은 일본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 내 국제공항(서울[인천, 김포], 부산, 대구, 제주 등)으로부터 수용 대학이 통상의 경로로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제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한다. 또한 일본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국내여비, 공항세, 공항 사용료, 여행에 필요한 특별세, 일본내의 여비(항공기 환승비용을 포함.) 여행 보험료, 휴대품·별도수하물에 관련된 경비 등은 유학생 본인 부담으로 한다. 「유학생의 거주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현주소」로 판단, 일본 입국 전에 한국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일본 입국 전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를 「거주지」로 판단하여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에서의 항공권을 마련한다. 또한, 본인의 사정에 의해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입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② 귀국 여비 : 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연구를 종료하고, 문부과학성이 정한 장학금 지급기간(상기 5. 장학금 지급기간 참조)의 종료 월내에 귀국하는 유학생에 대해서 본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항공권을 교부한다. 항공권은 수용 대학이 통상 경로로 사용하는 국제공항에서 해당 유학생이 도착하는 한국 국내의 국제공항(서울[인천, 김포], 부산, 대구, 제주 등)까지의 하급 항공권으로 한다. 귀국하는 유학생의 일본 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여비, 항공세, 공항사용료, 도항에 필요한 특별세, 한국 내에서의 여비(항공기 환승비용을 포함.), 여행보험료, 휴대품·별도수하물에 관한 경비 등은 유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본인 사정 또는 하기 「8. 장학금 지급 정지 사항」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기간 종료 월 전에 귀국할 경우 귀국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장학금 지급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 (예: 일본에서의 진학, 취직, 지속적으로 대학에 재적할 경우 등), 일시 귀국하는 경우의 귀국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8. 장학금 지급 정지 사항

다음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금까지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① 신청서류에 허위, 부정 사실 기재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
- ② 문부과학대신에 대한 서약 사항을 위반했을 때.
- ③ 일본의 법령을 위반하여,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졌을 때.
- ④ 대학 또는 예비교육 기관에서 퇴학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혹은 제적되었을 때. (채용기관에서 학칙에 준하여 징계처분으로 퇴학, 정학, 훈고 및 이러한 처분을 받은 경우 혹은 제적되었을 때.)
- ⑤ 대학에서의 학업 성적 불량이나 정학, 휴학 등에 의해 표준 수업 연한 내에 수료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 ⑥ 「유학」 재류자격을 새로 취득하지 않고 일본에 입국한 경우, 또는 「유학」 재류자격이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 되었을 때.
- ⑦ 다른 장학금(용도가 연구비로 특정된 것은 제외) 지급을 받았을 때.
- ⑧ 채용 후,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상위 과정으로 진학했을 때.

## 9. 모집 및 선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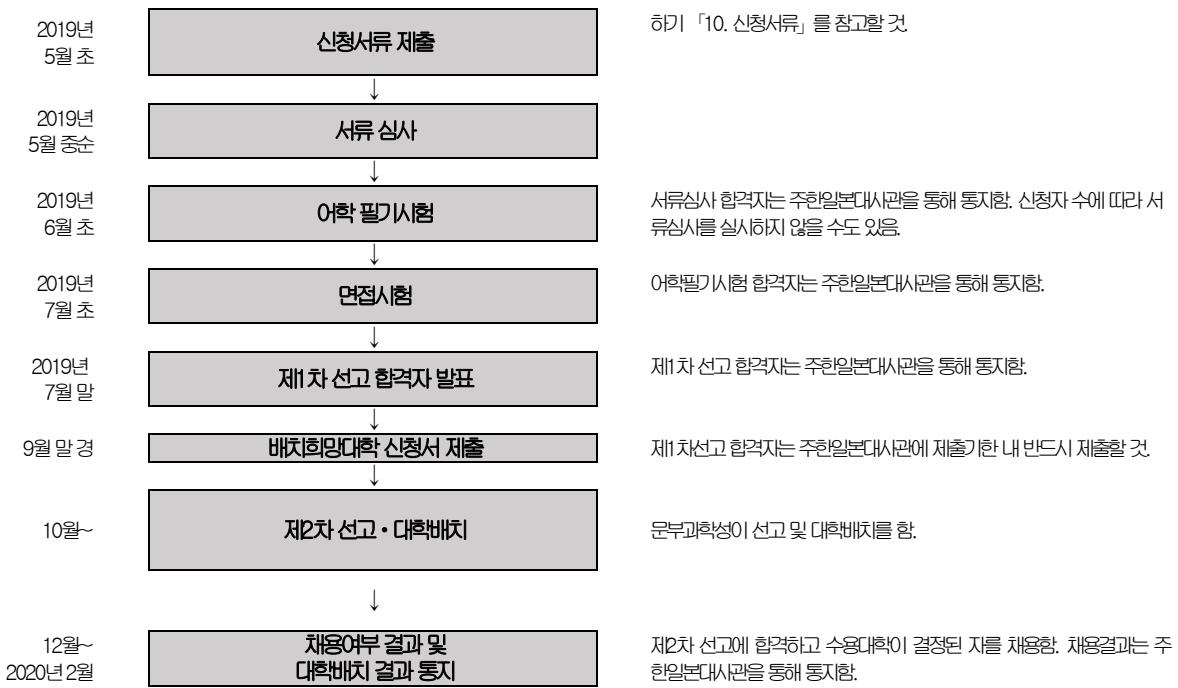
모집부터 선발, 최종 채용결과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상세한 내용은 하기 10. ~ 13. 항목을 참조 할 것.

2019년  
3월 중순

모집 개시

《보충 / 유의사항》

상세한 사항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 10. 신청 서류

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한다.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No.	서류 종류	원본 1부	사본 2부	비고
①	신청서	○	○	2020년도판 양식을 사용할 것 (주4)
②	배치희망대학신청서	○	/	2020년도판 양식을 사용할 것
③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	○	○	2020년도판 양식을 사용할 것 (주5)
④	모든 출신 대학 및 대학원 전체 성적증명서	○	○	출신대학 또는 해당 국가 정부가 발행한 것 (주6)
⑤	모든 출신 대학 및 대학원 전체 졸업(수료) 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증명서	○	○	졸업(수료)예정자는 졸업(수료)예정서 (주7)
⑥	최종 출신대학의 장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서	○	○	양식은 자유. 샘플 있음
⑦	건강진단서	○	○	2020년도 양식을 사용할 것
⑧	학위논문 개요 등	●	●	논문을 집필하고 있는 사람만 제출 (주8)
⑨	여학능력 증명서	/	(3부) ● 3부 제출. 원본은 필요 없음 (주9)	일본어, 영어 관련 여학능력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사본 3부 제출. 원본은 필요 없음 (주9)
⑩	현 직장 상사의 추천서	●	●	재직자만 제출. 양식은 자유. 샘플 있음.

(주1) ○표 서류는 제출 필수이고, ●표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할 것.

(주2) 모든 서류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첨부할 것.

(주3) 모든 서류의 첫페이지 우측 상단에 반드시 ①~⑩까지의 신청서류 번호(상기 표의 No. 참조)를 기재할 것.

(주4) 신청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선명한 화질로 사진 전용지에 인화한 것으로 크기는 3.5×4.5cm 상반신, 정면, 탈모할 것. 또한 사진의 뒷면에는 국적과 성명을 기입할 것. 신청서 데이터에 가공하지 않은 여권용 원본 사진 데이터를 첨부하여, 선명한 화질의 컬러로 인쇄한 것은 가능하다.

(주5)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은 대학 배치 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자신의 전공분야 및 일본에서의 연구 주제와 계획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

(주6) 신청자의 최종학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할 것.

(a) 학부 졸업자 – 학부 성적증명서

(b) 대학원 수료자 – 학부 및 대학원 모두의 성적증명서

(c) 학부 재학자 – 학부 입학 시부터 신청 시까지 판명되는 학기 전체의 성적증명서

(d) 대학원 재학자 – 학부 성적증명서 및 대학원 입학 시부터 신청 시까지 판명되는 학기 전체의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에는 학부, 대학원의 학년별 취득한 전과목의 성적을 알 수 있고, 그 성적이 몇 단계로 평가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학위취득증명서나 분모가 불분명하고, 몇 단위 취득으로 졸업했다고 기재된 증명서는 불가하다. 채용 전에 학부 졸업 또는 대학원을 수료한 경우 해당 학부 또는 대학원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

(주7) 신청자의 최종학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할 것.

- (a) 학부 졸업자 – 학부 졸업증명서
- (b) 대학원 수료자 – 학부 및 대학원 모두의 졸업(수료)증명서
- (c) 학부 재학자 – 학부 졸업예정증명서
- (d) 대학원 재학자 – 학부 졸업증명서, 대학원 수료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에는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졸업증서, 학위기 사본도 대체 가능하다(출신대학의 책임자의 확인증명을 첨부할 것.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졸업증서 및 학위기 원본은 제출하지 말 것.). 채용 전에 학부를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수료한 경우, 해당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수료)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

(주8) 학위논문 개요 등은 졸업논문, 발표논문 등의 요약으로 무관하나 학력 판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유의할 것.

첫 페이지에 반드시 이름을 기재할 것.

(주9)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인쇄하는 경우, 신청자의 이름 및 해당 자격 내용(레벨, 점수 등)을 포함한 페이지를 인쇄하여 제출할 것.

## 11. 제1차 선고

- (1) 주한일본대사관은 서류 심사, 어학필기시험 및 면접에 의해, 제1차 선고를 실시한다.
- (2) 어학 필기시험은, 일본어와 영어로 반드시 전과목을 수험할 것. 일본어 시험 결과는 일본 입국 후의 일본어 예비교육의 참고 자료로써 활용된다.
- (3) 각 선고에 해당하는 심사 방침은 다음과 같다.
  - ① 서류 심사 : 최종 출신대학의 GPA성적이 3.0만점 중 2.3점 이상일 것. 또한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것.
  - ② 어학 필기시험 : 일본 대학에서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일본어 또는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③ 면접시험 : 일본유학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본대학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실시하고 있는 자일 것. 또한, 일본어 또는 영어에 대하여, 일본의 지도교원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학 능력이 있을 것. 다만, 일본어 능력이 필요한 전공 분야를 희망하는 자는 상당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일 것.
- (4) 제1차 선고의 결과 통지는 주한일본대사관이 별도 지정하는 일시로 하고, 채택 여부의 이유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제 1차 선고에서 합격한 자가 반드시 일한공동고등교육유학생교류사업(석사, 박사과정)유학생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다.
- (5) 제1차 선고의 결과는, 제2차 선고와 대학배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 12. 입학 허가서(수락내락서) 및 배치희망대학 신청서 제출

- (1) 입학 허가서 유무는 최종 선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입학 허가서를 1개도 받지 못할 경우 채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제1차 선고합격자는 다음 사항에 따라 희망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을 것.
- (2) 제1차 선고 합격자는 제1차 선고 결과 발표 후부터 2019년 8월 23일(금) [일본현지시간] 전 까지 희망하는 일본대학과 직접 연락하여 대학원의 정규생 또는 비정규생으로서의 입학허가서, 혹은 수락내락서(이하, 「입학허가서 등」이라고 함)의 발행 의뢰를 할 것. 의뢰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
  - ① 신청서류 No.2 「배치희망대학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는 대학은 3개 대학까지이다. 때문에 취득할 입학허가서 등은 최대 3통까지. 4통 이상은 취득하지 않을 것.
  - ② 입학 허가서 등의 연락은 최대 3개 대학까지 동시에 가능하다. 동시에 4개 대학이상과의 연락은 하지 않을 것. 다만, 1개 대학에서 수용 불가라는 회신을 받아 2개이하 대학에서의 답변을 기다릴 경우에는 다른 1개의 대학으로부터 추가로 입학 허가서 등 발행 의뢰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③ 2019년8월24일(토) [일본현지시간] 이후 일본 대학에 입학허가서 등의 발행 의뢰를 취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상기 「2019년 8월23일(금)」은 대학이 입학허가서 등을 발행하는 기한이 아니므로, 대학에 회답을 재촉하지 말 것. 단, 회답 예정 시기를 지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함. 또한, 통상적으로 대학의 회답은 한달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발행 의뢰 시 계획적으로 행할 것.
  - ⑤ 처음 대학과 연락을 취할 때에는 연구지도를 희망하는 교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유학생 담당부서에 연락할 것(문부과학성에서 해당 대학의 유학생 담당부서로 제1차 선고 합격자가 입학 허가서 등의 연락이 갈 것이라고 사전에 전달함). 연락처는 주한일본대사관에서 보관하는 유학생담당부서 연락처 일람에 기재되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 ⑥ 대학과 연구자 검색에 있어서, 주한일본대사관으로부터 연구자 정보 웹사이트 등의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
- (3) 대학에 입학허가서 등을 의뢰 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 (a)와 (b)를 대학으로 직접 제출 할 것.
  - (a) 주한일본대사관에서 발행한 제1차 선고 합격증명서 (사본)
  - (b) 상기 「10. 신청서류」 중, ①, ③~⑥ 및 ⑧~⑪(아래 참조) 서류로, 각 서류에 주한일본대사관의 확인도장을 찍어 반환한 것(사본)

- ① 신청서
- ③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
- ④ 모든 출신 대학 및 대학원 전체 성적증명서
- ⑤ 모든 출신 대학 및 대학원 전체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증명서
- ⑥ 재직 대학 또는 최종 출신대학의 장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서
- ⑧ 학위논문 개요 등
- ⑨ 어학능력증명서 (※재외공관에 제출했을 경우에만)
- ⑩ 현재 직장 상사의 추천서 (※재외공관에 제출했을 경우에만)

이 외, 대학에서의 지시에 따라 필요서류를 제출할 것. 「② 배치희망대학 신청서」 및 「⑦ 건강진단서」는 절대 제출하지 말 것.

기본적으로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전자메일로 송부할 것. 단,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도 인정한다.

신청서류 ①, ③~⑥, ⑧~⑩에 확인 도장이 없거나, 서류의 글자나 사진이 불명확 또는 제 1차 선고합격증명서(사본)의 미제출 등의 경우에는 대학은 입학허가서 등의 발행 의뢰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할 것.

(4) 대학으로부터의 회답 현황을 수시로 주한일본대사관에 보고할 것. 또한, 대학에서 회답 현황을 바탕으로 최종 「배치희망대학 신청서」 및 취득한 입학 허가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지정한 매체로 제출할 것. 또한 수락 불가라는 회답이 있는 대학은 「배치희망대학 신청서」에 기입하지 말 것(어떤 대학의 연구과에 「수락 불가」라는 회답이 있었다면, 그 대학의 다른 연구과를 기입하는 것도 불가함).

(5) 일본입국 시기가 4월, 10월 어느 쪽도 상관없는 자일지라도 대학의 입학허가서 등에 기재된 일본입국 시기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과 잘 확인해 볼 것.

### 13. 제 2차선고와 대학배치

(1) 문부과학성은, 주한일본대사관의 제 1차 선고의 결과에 근거, 제 2차 선고를 실시, 수용대학이 결정된 자를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채용한다.

단, 신청자를 수용함으로써 대량 살상 무기 등의 확산 우려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기술 제공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나, 신청자가 경제산업성이 만든 외국 사용자 목록 게재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이 사람에 대해 대량 살상 무기 등의 관련 기술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는 채용하지 않는다.

(2) 대학배치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입학 허가서를 받은 대학이며, 「배치희망대학신청서」에 기재한 제 1부터 제 3희망 대학에 대하여 문부과학성이 배치 협의를 행한다. 협의 결과, 대학에서 승낙을 받는다면 해당 대학에 배치한다.

다만, 희망하는 대학이 국립대학 및 공사립 대학인 경우, 수업료 등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예산 제약 등으로 국립대학에 우선 배치 협의를 하기 때문에 배치희망대학 신청서에 기재된 희망순위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3) 대학원 정규과정의 입학허가서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생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정규과정으로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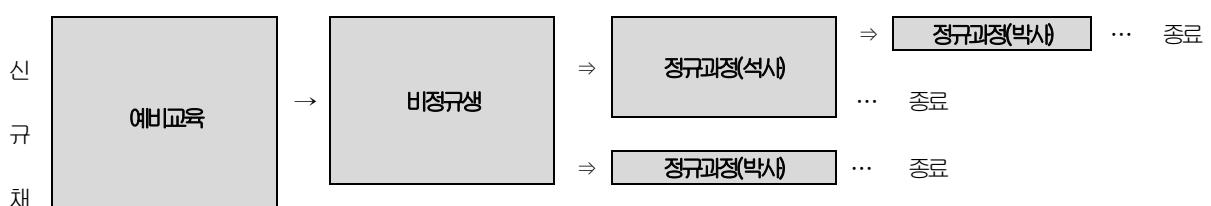
(4) 제 1차 선고의 어학필기시험 결과 등에 근거하여 대학에서의 강의·실험·실습 등의 연구 지도를 받기 위한 일본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수용대학이 판단한 경우에는, 최초 6개월간 배치된 대학 또는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대학 등의 예비교육기관에 입학하여 일본어 교육을 받는다. 일본어 교육을 수료한 자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배치 대학으로 입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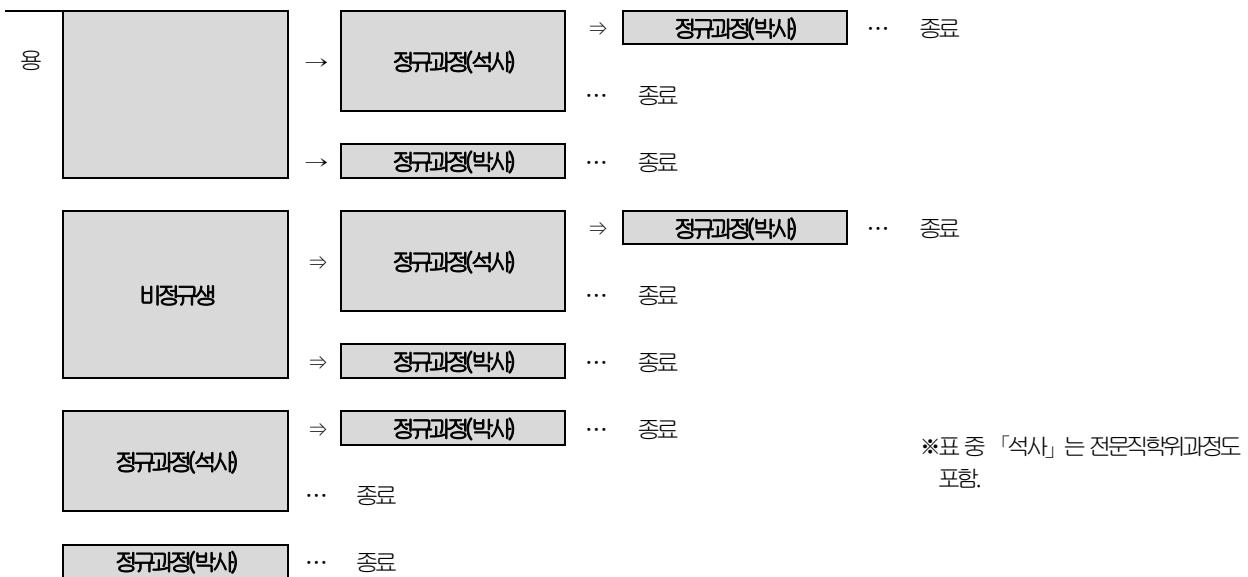
(5) 유학생이 본인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본어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수용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 교육을 거치지 않고 정규생 또는 비정규생으로 대학에 직접 입학 한다.

(6) 최종 채용 여부 결과 및 피 채용자의 대학 배치 결과는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대체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2 월 중에 통지된다. 채용 여부 이유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대학 배치 결과에 대한 이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 14. 진학 및 학위 취득

일한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석사, 박사과정) 유학생으로서 가능한 진학 경로는 다음과 같다.





(1) 표 중 「→」는 진학 시, 장학금 지급기간 연장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이다. 「⇒」는 진학 시, 장학금 지급기간 연장 신청이 필요한 경우로, 연장 신청에 채용되고 대학원의 정규과정 시험에 합격하면 국비외국인유학생으로서 진학할 수 있다. (상기 「6. 장학금 기간의 연장」 참조)

(2) 대학원 입학시험은 대학에 따라 다르나, 외국어, 전문과목, 논문, 면접 등이 부과된다.

(3) 일본의 학교 제도 상, 대학원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과정

대학 학부교육 후의 과정이다. 표준 수업 연한은 2년이지만, 1년 이상 2년 미만 과정도 있다. 수료하면 석사 학위가 수여된다.

② 박사과정

석사과정 수료 후의 3년간의 과정이다. 수료하면 박사 학위가 수여된다.

③ 전문직 학위 과정

전문직 대학원 과정이다. 표준 수업 연한은 2년이지만, 전공분야에 따라 1년 이상 2년 미만 과정이 있다. 수료하면 석사(전문직) 학위가 수여된다.

## 15. 주의사항

- (1) 일본으로 입국에 앞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의 기후, 풍토, 습관, 일본과 모국과의 법 제도의 차이, 학교의 상황 등에 대해,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입국 후 장학금을 수령하는데 까지 약 1개월에서 1개월 반정도 필요하므로, 생활 자금으로서 대략 필요로 하는 비용을 최저 미화 2,000달러 정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장학금은 일본 입국 후, 각자가 개설한 일본 우체국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본 계좌 이외의 계좌에 대한 장학금 송금은 하지 않는다.
- (4) 일본 입국 후 본인 부담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5) 숙소에 대하여

① 대학의 유학생 숙소

유학생을 위한 전용숙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을 진학하는 자는 희망할 경우, 소정의 조건하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입실 수에 제한이 있어 희망자 전원이 입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숙소에 관한 제반 비용은 본인부담이다.

② 민간 숙소 등

상기의 숙소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일반 학생 기숙사나, 민간의 숙소에 본인 부담으로 입주하게 된다. 또한, 부양 가족(배우자나 자녀)을 동반하는 경우, 가족용 숙소의 확보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채용자가 일본 입국 후, 숙소를 확보한 다음에 동반 가족 등을 불러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채용 된 경우, 채용에 관한 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배치 대학, 연구과 학부, 전공분야, 재직 기간, 수료 후의 진로, 연락처 (주소, 전화 번호, E-mail 주소)를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유학생 사업 (유학 중의 지원, 유학 종료자의 팔로우업, 유학생 제도 개선)에 사용할 목적으로 관계 행정 기관과 공유한다. 또한 채용자에 관한 정보(생년월일 및 연락처를 제외)는 일본정부가 작성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촉진을 위한 홍보자료 등에서, 특히,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귀국 국비외국인 유학생을 소개 하기 위해 공표하는 경우가 있다.

일한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석사, 박사과정) 유학생으로 채용될 때, 일본정부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의

준수 사항을 정리한 서약서 제출 및 본 취급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 (8) 이 모집요강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그 외에 의문이 있다면 주한일본대사관에 문의하고, 그 지시에 따를 것.
- (9) 이 모집요강에 정해진 것 이외에 일한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석사, 박사과정)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비외국인유학생 제도 규칙 등을 적용함과 동시에 일본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주의 : 대한민국 응모자의 경우 반드시 [별지 1] 연구유학생(2020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장학금

유학생 및 일한고등교육유학생 교류사업) 대한민국 응모 절차 및 선고 방법에 대한 안내를 참조하여 응모할 것.